

의안번호	2220453
의 퇴 인	김대식의원
회 답 일	2026.8.28.
추계번호	26D337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구조대상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	의무규정
	안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상해보험, 여행자 보험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범위에서 지급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하여도 구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며,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되는데, 구조금액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또는 피해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 범위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표 1]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월급여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			
구조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포함)			48개월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가족	자녀	25세 미만	48개월
		25세 이상	28개월
		장애인	48개월
	부모	60세 이상	36개월
		60세 미만	28개월
		장애인	36개월
	손자·손녀	25세 미만	36개월
		25세 이상	24개월
		장애인	36개월
	조부모	60세 이상	36개월
		60세 미만	24개월
		장애인	36개월
	형제자매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36개월
		19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	24개월
		장애인	36개월
3.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또는 부모			28개월
4.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24개월
5.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위 1.~4.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위 1.~4.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개월 수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① 60세 이상인 부모		
	② 25세 미만인 손자·손녀		
	③ 60세 이상인 조부모		
④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⑤ 장애인			

주: 단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표 2] 장해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												
장해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 12급	13, 14급
개월 수	48 개월	44 개월	38 개월	34 개월	28 개월	24 개월	20 개월	14 개월	10 개월	5 개월	4 개월	3 개월

주: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표 3] 중상해구조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

주: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 다만,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한 구조대상 범죄 피해 건수 및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월급액과 상해보험 등을 통해 받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현시점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최근 4년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지급액	구조금 종류별 지급내역
2022	9,503	유족구조금 138건 지급, 장해구조금 23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8건 지급
2023	8,990	유족구조금 110건 지급, 장해구조금 14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4건 지급
2024	7,910	유족구조금 113건 지급, 장해구조금 16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6건 지급
2025	7,552	유족구조금 91건 지급, 장해구조금 17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35건 지급

자료: 2025년 법무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assembly.go.kr